

특집

feature articles

닭고기 살 때는 당연히!
‘품질보증마크’ 확인!

편집부

닭고기 살 때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품질보증마크’ 확인하는 것!



요즘 마트에 가면 대부분의 육류가 모두 포장용기에 담겨 내가 원하는 부위대로 구입할 수 있다.

닭고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통닭을 비롯 다리, 가슴, 날개 등 부분 육으로 포장되어 필요한 부위만 골라 살 수 있어 편리할 뿐만 아니라 비용 절감 효과도 있다.

같은 부위라도 브랜드에 따라 가격이 달라지는데, 가격을 따지기 전에 한가지 더 살펴봐야 하는 게 있다. 바로 국내산 닭고기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

어느 마트를 가더라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닭고기지만 국내산인지, 수입산인지 곁모습만 봐서는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아주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품질보증마크”가 붙여져 있는 제품을 고르면 된다.

닭고기 살 때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당연히! ‘품질보증마크’ 확인하는 것!

국내산 닭고기를 선택하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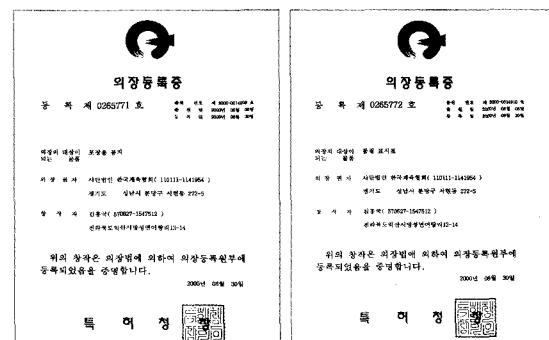
“품질보증마크”는 국내산 닭고기와 외국산 닭고기의 차별화로 우리나라 닭고기 산업을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국내산 닭고기와 외국산 닭고기의 차이점을 홍보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02년 (사)한국계육협회에서 제정한 마크이다.

이 “품질보증마크”는 국내 모든 닭고기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크가 아니다.

“품질보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닭고기 회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계장 시설을 갖추고 정상 가동하고 있어야 하며, 위해요 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을 받아 신선하고, 위생적으로 닭을 생산하는 (사)한국계육협회 회원사(닭고기 생산전문 업체)만 사용할 수 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품질보증마크”는 (사)한국계육협회 회원사인 닭고기 전문업체에서 생산한 닭고기 상품 포장지(박스포함) 여백에 작업장명과 함께 표시되어 있다. 태극 모양의 마크를 찾으면 된다.



의장등록증(제0265771호) 의장등록증(제0265772호)

함부로 사용하면 관계법에 의해 처벌

“품질보증마크”는 특허법에 의장등록(제0265771호, 제0265772호) 되어 있어 (사)한국계육협회 15개 통합경영분과 회원사(닭고기 생산 전문업체) 이외의 업체에서 사용할 경우 관계법에 의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사)한국계육협회와 회원사에서는 수시로 판매업소를 순회 확인하여 “품질보증마크”를 무단 사용 시 관계당국에 고발 등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이제 영양만점 닭고기 구입하실 때 가격보다 먼저, 우리나라 태극 모양이 그려져 있는 “품질보증마크”를 꼭! 확인하세요! 